

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산업시설용지 처분(매각)공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'산업집적법')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(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)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 공고를 실시합니다.

2023년 02월 15일(수)
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1. 매각용지 현황(산업시설구역/공장용지)

구 분	업 체 명	사업장 소재지	처분내용	처분가격
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	(주)을인**	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84-8번지	대 지 4,125.7㎡ (건축물 없음)	758,027,000원

2. 처분사항

가. 처분가격 : ₩758,027,000(금 칠억오천팔백이만칠천원 정)

나. 대금지불조건 : 일시납 *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

*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하나, 매매계약 및 등기(소유권)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(30일) 이내 완료하여야 함

다. 처분관련 유의사항

-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처분을 제한받게 됨
- 본 처분 건 관련,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,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

3. 신청자격

가.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및 제18호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'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'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69호)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

나. 우선 유치대상 (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)

-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(확장) 기업
- '중소기업 창업지원법'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(신청일 현재) 창업 승인된 기업
- '국토계획법'상 주거, 상업,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-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

※ 신청인은 매각용지의 개발·실시계획,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

다. 입주제한

- 토지이용계획 사항 (관련 법령 확인)

지역지구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지구등	도시지역 , 일반공업지역(2014-11-28) , 지구단위계획구역 (2014-11-28) , 중로1류(폭 20m~25m)(2014-11-28)(접합)
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	가축사육제한구역(2022-12-22)(절대금지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일반산업단지<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>, 산업육성구역(2020-11-17)<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>

- 생산공정 단계별 「악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

- 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

- 도금 및 도장업종(붙임 참조)
-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

4. 매각일정 :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매계약 체결

구 분	기 간	비 고
처분공고	'23.02.15(수) ~ 03.07.(화)	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 (ims.innopolis.or.kr)
입주신청	'23.02.15(수) ~ 03.07.(화)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방문 접수(3/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입주심사	'23.3월 2주차	별도 공지
양도대상자 선정통보	'23.3월 2주차	별도 공지
매매계약 체결	양도대상자 선정통보 후	양도자-양수인
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체결	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내	특구재단-양수인
소유권 이전	양도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	양도자-양수인

- *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공고기간

- 가. 공고일 : 2023.02.15.(수)~03.07.(화) 14일간
- 나. 접수처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, 전북테크비즈센터
3층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(문의: 063-905-9744)
- 다. 제출방법 : 방문 접수 (접수 마감일 업무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제출서류 일체를 제본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10부 제출 요망
(제출서류 1부에는 원본포함 필수)

- *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, 사전 접수 요망
- *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라. 제출서류 :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공통서류	○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○ 법인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(개인), 사업자등록증 사본 ○ 인감증명서(법인/개인으로 본인발급에 한함), 사용인감계(사용 시)	각 10부
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(해당기업 에 한함)	○ 최근 2년, 표준재무제표 증명원(국세청) ○ 공장등록증명원(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) ○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(1~5종) ○ 신기술(NEP,NET), 특허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○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(한국무역협회, 거래은행 발행) ○ 입주우선순위에 해당할 경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	

- * 모든 증빙서류는 **개인정보를 삭제**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6. 입주심사

- 가. 선정방법 : 신청자 입주자격 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「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76호)」에 따른 **입주기관심의회회의에 심의 후 대상자 선정**
- * 비경합(1개 기업 접수)일 경우, 연구개발특구에서 적격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

나. 심의내용 : 입주자격 여부 및 사업계획평가

- * 입주심사 평가기준 : [붙임5] 참조

다. 선 정 일 : 별도 공지

- * 접수마감 결과에 따라,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

- 마. **기타내용** : 매수자로 선정된 선순위 기업이 입주계약, 매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를 양도대상자로 선정

7. 매수 자격상실

- 가.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나.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다.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(또는 기업체)으로 신청한 경우

8. 기타 주의사항

- 신청자는 특구재단이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(등기이전)을 완료하여야 하며,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(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)
-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·처리하여야 함
-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·건축물 현황, 압류여부, 업종, 환경 인·허가 여부,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·행정적·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
-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(계약)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·행정적·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(계약) 주체에 있음
-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
-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, 처분공고에

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

※ 입주기업체(처분신청자)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(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)

- 매수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,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,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,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·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신청자에게 있으며,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야 함
- ※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·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
-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,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
- 토지사용 시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우수·오수·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·연결하여야 하며, 토지 사용 중 도로·상하수도·경계석·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·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
- 가스, 통신, 전력, 용수, 유선방송,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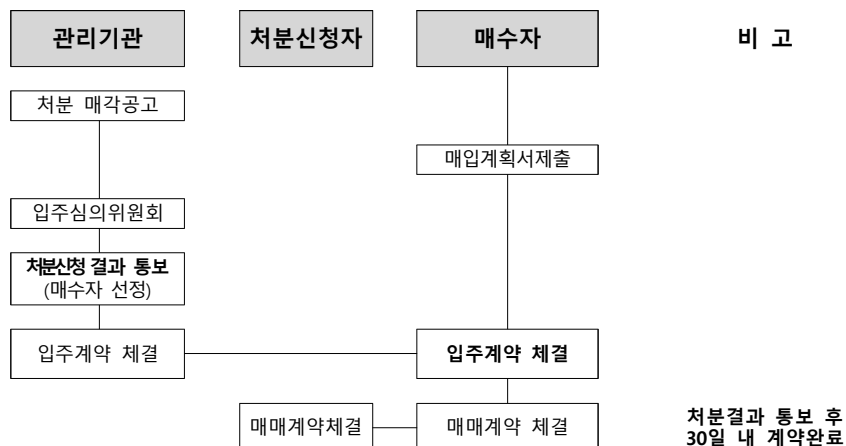
-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시행령, 시행규칙),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,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·실시계획·지구단위계획,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름
-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- 붙임 1. 처분(매각)공고 대상지
 2.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
 3. 입주신청서
 4. 사업계획서
 5. 입주심사 평가기준
 6.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(변경)계획(별첨)

9. 담당자 연락처

구 분	담당자	주소 및 연락처
관리 기관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황지은 연구원 - 제출서류 관련 문의	·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,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특구본부 · 063-905-9744
처분 신청자	(주)울인테크 - 대금지불, 계약, 토지 현황, 압류여부 등	·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03, 상가동 205호 · 063-223-0617

10. 주요 절차



붙임1. 처분(매각)공고 대상지



붙임2.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4

*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

구 분		완주 테크노밸리 (1단계)
산업 육성 구역	관련 규정	-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 - 전라북도 고시 제 2017-100호(2017. 05. 25)
	입주 가능 업종	-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, 1차금속 제조업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, 연구개발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,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7, 21, 22, 24, 25, 27, 29, 30, 31, 35, 52, 70, 20, 23, 26, 28, 10797에 해당하는 업종 - 「산업집적법」 시행규칙 별표5 '첨단업종' 및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(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) -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· 임대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(제조업은 공장등록,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) · 공급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(지식산업센터에 한함. 단,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) - 단, 위 업종 중 도급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
	환경 관리 기준	- 생산공정 단계별 「악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- 다만,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, 산업단지 조성취지, 환경·소음·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

붙임3. 입주신청서

신청번호		2	0	2	3	-			*신청번호는 관리기관에서 작성	
전북R&D특구 완주테크노밸리(1단계) 산업시설용지 입주신청서										
신청인	회사명						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				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주소 (법인소재지)							(T: , F:)		
신청내용	회사명							대표자		
	신청지번		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584-8번지							
	신청업종		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표)		분류번호 (세세분류5단위기제)		생산제품(연구분야)			
			※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()							
	공장건축계획 (단위:㎡)		부지면적		건축면적 (제조+부대)		제조시설면적		부대시설면적	
4,125.7										
기존공장	소재지	공장						(T: , F:)		
		연구소						(T: , F:)		
	입주형태		(분양)		(임차)		(기타 :)			
	입주업종		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표)		분류번호 (세세분류5단위기제)		생산제품			
			※ 첨단업종일 경우 표시()							
	규모 (단위:㎡)		부지면적		건축면적 (제조+부대)		제조시설면적		부대시설면적	
매출액		백만원		종업원수		총계	남여			
전북연구개발특구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완주테크노밸리(1단계)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회사명(대표자) : ㉠										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										
첨부서류		1. 매입계획서(소정양식)1부 2. 사업자등록 증명서 /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. 기타 각종 증빙서류(입주심사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)								

붙임4. 사업계획서

사업계획서

년 월 일

회사명 : (인)

※ 매수업체 선정평가시 확인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작성바라며,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(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 할것)

〈사 업 개 요〉

업체 현황	회 사 명		대 표 자		
	법인등록번호		전화번호 (FAX)	(/ /) (/ /)	
생산 제품 현황	업종명칭 (5단위)		기 준 공 장 면 적 율	%	
	생 산 품 명		주 원 자 재		
공장 규모	용도지역	산업시설구역 (공업용지)		지 목	공장용지
	공 장 가 동 개시(예정)일	년 월 일 (착공예정일)			
	공장의 규 모	건축연면적	제조시설 : m ² , 부대시설 : m ²		
		건 폐 율	%	용 적 율	%
매입 자금 규모	계	자 기 자 본		타 인 자 본	
	(토지 매입+ 건축물 건설자금 고려) 백만원	백만원		백만원	
	(조달기관 등 구체 적 내역) 서술	○ ○ ○		○ ○ ○	
○ “업종명칭 및 기준공장 면적률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인 5단위까지 기입하며 진흥재단 전자민원서비스홈페이지- 민원서식-관련법령 참고 ○ “건축면적”은 공장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문을 포함하여 기재					

〈주요연혁(설립일 포함)〉

- 1971. 2. 16 : 기업설립(예시)

〈조직도 및 직원구성 현황〉

가. 조직도 : 실 국 과				
나. 인 원 : 총 00명				
	신분별	단위 : 명		
기준일		박 사	석 사	학사이하
연구직				
관리직				
생산직				

〈주요연구분야 및 지적재산권 현황〉

가. 주요연구분야

-
-
-
-

나. 지적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프로그램등) 현황(사본제출)

- 해당없을 경우 “해당없음”

-
-
-
-

다. 법률 또는 정부공인 인증서 현황(사본제출)

- “예” 기업부설연구소인증, 벤처기업인증, 이노비즈인증 등 서술

-
-
-

<예산 및 매출액>

가. 예산(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)

구 분	년월일(전년)	년월일(올해)	년월일(다음)
자 본 금	재무제표 기준 작성	계획치 or 예상치 작성	계획치 or 예상치 작성
매 출 액			
영 업 이 익			
순 수 익			

※ 회계법인의 검증된 재무제표 사본 확인후 인정

나. 매출예상

생산(백만원)			수출(천불)		
연간계획	당분기실적	누계실적	연간계획	당분기실적	누계실적

<사 업 계 획>

가. 사업목적(추진배경)

나.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

※ 본 산업단지에 반드시 입주해야 할 필요성, 입주기업체와 상관관계 및 미치는 영향 등 기재

다. 세부사업내용

<공장건설 계획>

(단위 : m²)

구 분		현 재	년	년	년	계
계						
제조 시설	공 장					
부 대 시 설	사 무 실					
	창 고					
	기 숙 사					
	식 당					
	환경시설					
	기 타					

※ 각 시설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할 것.

<생산공정도 해설>

생 산 공 정 도	생산공정 요약설명 (반드시 기재)			
	설 명	사 용 원료	사 용 량	사 용 장비명

※ 제품 생산공정을 자세히 기재

<생산시설 명세>

시 설 명	용 량	수 량	비 고

<배출시설 명세>

시 설 명	용량 및 규격 (HP · kW · m ²)	수량	배출오염물질		비 고
			종 류	배출량	

※ 기재요령 : 「수질환경보전법」 ·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 「약취방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약취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기재.

※ 상기 법률에 해당되는 배출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<용수 · 전력 · 연료의 사용계획>

용 수(톤/일)		전 력(kW/일)		연 료		
생활용수	공업용수	일반전력	자가발전	석 유 (ℓ/일)	가 스 (m ³ /일)	기 타 (톤/일)

<생산제품 개요>

생산품명	
사용분야	
생산제품 특 징	
제품모형	

※ 제품 사진 또는 카다로그 첨부

<대표자 이력>

성명	
주소	
학력	
경력	
특기사항	

<공장 배치 계획>

대략적 위치 기재

※ 공장배치도 작성요령

- 건축물의 용도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, 면적, 연도별 설치계획 표시

붙임5. 입주심사 평가기준

평가항목		주요 심사 내용
기본 사항	우선유치대상	관리계획상 우선유치 대상 여부
	건축 계획의 타당성	• 착공 및 준공시기와 부지 활용방안 • 건축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• 건축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부지와의 조화 등 • 기타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
	재무안정성 및 자금계획	•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및 안정성 • 건축 진행상의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• 부지매입 및 건축 진행상의 자금 조달 능력 및 가능성 등
사업 계획	사업수행 및 향후 파급효과	• 사업계획의 적정성 • 기업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등 • 기업입주로 인한 기대(파급)효과(성장성, 안정성, 규모지표 등)
	특구조성목적과의 부합성	•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주변여건 및 환경과의 조화 • 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환경관련 저해요인 저감방안 등 • 첨단산업 및 지식·정보산업 등에 부합하는 쾌적한 산업시설 구축 •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과 연계성 강화 등 • 산·학·연 주체와의 상호협력 활성화 여건

< 심사 참고사항 : 입주대상기업의 기본점검사항 >

☐ 입주자격 및 입주제한 여부

-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종, 건축계획에 해당하지 않은 자
-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,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처리계획

☐ 우선 유치 대상

-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(확장) 기업
- ‘중소기업 창업지원법’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(신청일 현재) 창업승인된 기업
- ‘국토계획법’상 주거, 상업,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-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

- 10 -